

---

---

삼척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

---

---

# 협 의 의 건 조 치 결 과

## (강원도청)

2014. 5.



삼척시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총괄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①	<p>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(‘2011.10, 환경부)(이하 “수립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시장·군수는 도지사 와 사전협의 후 관계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.</p> <p>- 따라서, 삼척시에서는 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반영 여부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한 후 환경부 승인요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</p>	<p>▶ 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반영 여부 등의 조치결과 및 협의를 완료한 후 환경부와 의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</p>	반영
②	<p>○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,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, 수립지침에서 열거한 국토계획, 도 및 시군 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,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등은 요약하여 별도 작성하여 관련계획 조사 부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</p>	<p>▶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관계된 계획의 연계성 여부를 요약하여 별도 작성하였음</p>	반영
③	<p>○ 기초조사는 수립지침에서 정한 기간별, 내역별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하며,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물 수급량 현황 및 이용 전망에 대해 관련계획의 연계 등을 면밀히 예측·분석하여야 함.</p>	<p>▶ 물 수급량 현황은 상수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, 물 이용 전망은 통계자료를 통한 인구 추정 및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를 통해 장래 용수수요량을 분석하였음(본 보고서 2장 2.4 물 이용 전망 참조)</p>	반영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분야별 의견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④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량 등 수치와 관련 표 수치내용 불일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및 물 재이용 총 목표량 등이 관련 표에서 제시한 목표량 값과 상이한 바, 재검토하여 제시</li> <li>- 재정계획에서 소요 사업비는 2,620백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단계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에서는 2,921백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사업비 분석 및 설명자료 재검토·제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및 물 재이용 총 목표량을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소요사업비 재검토를 통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관련 표 수치내용을 일치시켰음</li> </ul>	반영
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현황, 특성 등 하천기초자료는 '92, '95년 등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, 최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 미인용 사유를 제시</li> <li>○ 또한, “2.3 관련계획의 조사”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조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추가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12년 수립된 삼척오십천, 추천, 임원천, 호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(변경)은 하천 하류부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나, 최근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추가 검토하여 제시하였음</li> <li>▶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조사내용은 2.1.5 하천 및 수계현황에 수록하였음</li> </ul>	반영
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수립지침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하고,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에 대하여도 분석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 20~30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(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)</li> <li>-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 물 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, 연령별 인구분포 조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본 보고서 2-47~49에 과거 25년간의 인구실태를 조사하여 추세를 분석하였으며, 출생, 사망, 전입, 전출율을 조사하였고 연령별 인구분포를 조사하여 수록하였음</li> </ul>	반영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분야별 의견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⑦	○ 물 재이용 산업현황에서 “전국, 경상북도, 삼척시”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, “전국, 강원도, 삼척시”로 자료 수정	▶ 관련 내용은 오타로 “전국, 강원도, 삼척시”로 수정하였음	반영
⑧	○ 토지이용 현황에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이 서로 상이한 바, 관련자료의 검토·수정 제시  - 또한, ‘12년도와 ’20년도의 토지이용계획 변화추이를 분석제시하고, “수립지침”에 따라 도시계획상 토지이용면적 중 개발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분석제시	▶ 토지이용 현황 값을 재검토하여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 ▶ 토지이용계획을 조사하여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개발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제시하였음	반영
⑨	○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,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.  - 삼척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연도별 목표량과의 비교·분석하여 제시하고, 분석 값이 서로 상이한 경우, 원인 등은 해당계획과 연계·분석하여 제시	▶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상이한 부분은 장내용수 재이용량임.  ▶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내용수량은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700㎥/일,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 29㎥/일이나, 이는 단위환산에 대한 오류로 2011년 장내용수 재이용량인 682.27㎥/년, 28.7㎥/년을 잘못 적용하였음  ▶ 본 계획에서는 오류를 수정하여 계획하였으며 분석내용은 3.3.4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에 수록하였음	반영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분야별 의견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⑩	<p>○ 현 관련계획 조사내용은 계획별 단순 열거하여 기술하였는 바, 각 관련계획과 현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·비교하여 제시</p> <p>- 특히, 관련계획의 물 재이용 계획과의 관련성, 계획 반영여부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표로 요약제시</p> <p>- 각종 개발계획(개발계획면적, 계획시기 등 포함)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물 재이용 관련여부 등을 용수사용, 물 재이용량 등 세부내역을 표로 요약제시</p>	<p>▶ 관련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요약 제시하였음</p> <p>▶ 또한, 불필요한 관련계획을 삭제하고 물 재이용과 관련된 용수수요량 산정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관련계획을 추가하였음</p>	반영
⑪	<p>○ 아울러, 관련계획 조사내용은 삼척시 개발관련 부서의견을 들어 대규모 개발사업(골프장, 온천, 리조트, 군부대(숙소) 등)을 조사·제시하고, 이에 대한 물 수요량 등을 분석·제시</p> <p>- 관련부서 의견 등은 총괄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</p>	<p>▶ 삼척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물 재이용 촉진법 시행일(2011. 6. 9) 이전에 승인 고시된 사업들로 법적인 대상시설이 없는바, 별도의 개발관련 부서의견은 없음</p>	미반영
⑫	<p>○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에서 급수구역별 수요량, 공급량 및 과부족량을 관련표(p.2-125)로 제시하고 있는 바, 제시내용 중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</p> <p>- 또한, 연도별 과부족량 산정에서 제시한 시설용량과 시설확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용량과의 연계분석 자료를 제시하고, &lt;표 2.3.2-9&gt;, &lt;표 2.3.2-11&gt;의 시설계획은 급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</p>	<p>▶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에서 제시된 시설용량은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(변경)(2010, 삼척시)에서 계획된 용량이며 관련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였음</p> <p>▶ 또한, 연도별 과부족량 및 시설확충계획도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(변경)(2010, 삼척시)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바, &lt;표 2.3.2-9&gt;, &lt;표 2.3.2-11&gt;의 시설계획은 급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</p>	반영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분야별 의견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빗물이용시설 목표량(p.3-63, 표 3.1.6-1)은 각 세부시설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목표량을 제시</li> <li>- 시설명칭, 설치목표량(m<sup>3</sup>), 빗물이용량(m<sup>3</sup>/일) 등을 단계별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명칭, 목표량, 이용량 등을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목표량을 제시하였음</li> </ul>	반영
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계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15년부터 오십천의 건전화방지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활용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</li> <li>○ 따라서, 현재 방류수 수질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기준(p. 3-97) 중 하천유지용수 기준 적정여부 및 방류수 재처리 시설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제시</li> <li>- 재처리시설 필요시에는 사업비 분석 및 자원계획에 반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분석하여 하천유지용수 기준 적정여부를 분석하여 별도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</li> <li>▶ 사업비 산정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[별첨 6-3]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(하천유지용수) 용량별 투지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</li> </ul>	반영
⑮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.5-4에서 제시한 물 재이용 총괄 요약표는 불임서식에 따라 일부항목을 수정하여 작성하고, “3.6 물 재이용 총 목표량”에 관련 총괄표를 추가하고, 총괄요약표에 따라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시설별 자원계획을 요약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물 재이용 목표량 관련 총괄표 및 사업계획 총괄요약표를 작성하여 수록하였음</li> </ul>	반영

#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## ■ 기타 의견

번호	협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⑬	○ 빗물이용 대상시설 현황 중 의무 대상시설 기준이 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명시한 대상시설 및 면적기준과 상이한바,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·제시	▶ 물 재이용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여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시설만 의무대상시설로 명기하였음	반영